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56 발의연월일: 2021. 2. 24.

발 의 자:서일준・이종성・서병수

하영제 • 이주환 • 김태흠

이용빈 · 양금희 · 임이자

지성호 · 김성원 · 김정재

조수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,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,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사의 동물 진료 시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, 진료비용 등에 대하여고지받지 못하고 있는 등 동물 소유자등이 동물 진료와 관련하여 알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에 필요한질병명,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,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

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,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등).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진료행위에 관한 설명)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진료행위(이하 이 조에서 "수술등"이라 한다)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동물 소유자등"이라 한다)에게 수술등의 필요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동의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의2제2항 중 "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동물 소유자등"이라 한다)로부터"를 "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"로 한다.

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3(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,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- 제20조의4(진료비용 등의 고지 등)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0조의3제 1항에 따라 고시된 진료항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 다.
 -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소유자등의 권리와 의무 등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동 물병원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게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1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의3을 제6호의5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의3 및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2의2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 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
 - 6의3.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에 대한 비용을 고지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
 - 6의4.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 소유자등의 권리와 의무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13조의2(진료행위에 관한 설명)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|
| |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 |
| | 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농 |
| |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 |
| | 료행위(이하 이 조에서 "수술 |
| | 등"이라 한다)를 하는 경우 동 |
| | 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|
| | "동물 소유자등"이라 한다)에게 |
| | 수술등의 필요성 등 농림축산 |
| |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|
| |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 |
| | 다만,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 |
| | 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동물 |
| | 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중 |
| | 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 |
| |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 | 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동의 |
| | 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 |
| | 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|
| | <u>한다.</u> |
| 제20조의2(발급수수료) ① (생 | 제20조의2(발급수수료) ① (현행 |
| 략) | 과 같음) |

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 관이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(이하 "동물 소유자등"이라 한다)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 지·게시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| ② |
|-------------|
| 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 |
| |
| |
| |
| |
| • |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3(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,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있다.

제20조의4(진료비용 등의 고지 등)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 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진 료항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.

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소

제41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 2의2. (생 략)

 3. ~ 6의2. (생 략)

 <신 설>

<신 설>

유자등의 권리와 의무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에 게시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 지 및 게시의 방법과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4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- 2 -----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2의2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진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 니한 자
- <u>2의3.</u> (현행 제2호의2와 같음) 3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- 6의3.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 여 진료에 대한 비용을 고지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
- 6의4.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

 여 동물 소유자등의 권리와

 의무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

 자

 6의3. (생 략)
 6의5. (현행 제6호의3과 같음)

 7. ~ 9. (생 략)
 7. ~ 9. (현행과 같음)

 ③ (생 략)
 ③ (현행과 같음)